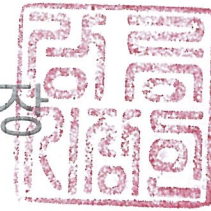
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」 제2조(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사전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(수취인불명)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6. 10. 18.

강릉시



1. 공 고 기 간 : 2016. 10. 18. ~ 2016. 11. 1.(15일간)
2. 공 고 장 소 : 전국 시·군·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3. 공 고 내 용

1. 처분의 제목	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 송달 공고						
2. 당 사 자	성 명	의료법인대한의료재단(141121-0*****)					
	주 소	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448-5					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『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』 제2조 위반						
4. 목적부동산	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329-45 나동						
5. 처 분 내 용	과태료 부과금액 : 8,580원 (20% 감경금액)						
6. 법 적 근 거	『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』 제2조, 제11조, 제12조						
7. 의 견 제 출	제 출 처	기관명	강릉시청	부서명	지적과	담당자	홍희정
		주 소	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(홍제동)		전화번호	033-640-5276	
	제출기한	2016년 11월 1일까지					
		팩 스	033-640-4498				

※ 유의사항

처분사전통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이의가 있을 시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 공고기간 경과 후 본 과태료 금액으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
의견제출서
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		
2. 당사자	성명(명칭)	
	주소	
3. 의견		
4. 기타		

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 제출인 주소

(전화 :)

성명

(서명 또는 인)

강릉시장 귀하

비고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